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98
----------	------

제출연월일 : 2023. 7. .
제출자 : 하남시장

1. 개정이유

- 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포함) 수수료 면제로 시민부담 경감 및 민원편의 도모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규정 준용

2. 주요내용

- 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포함) 수수료 면제대상 신설(안 제7조제13호)
-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 준용(안 제3조제2항)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변경(현행 별표 1 삭제)
- 다. 띄어쓰기 및 인용 조례 명칭 등 정비(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3. 5. 25. ~ 6. 14.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요금)” 을 “(증명 등의 수수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를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로 한다.

-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항과 별표 1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을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로, “(제출을 포함한다)” 를 “(제출)” 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른 해당” 을 “해당” 으로 한다.

- 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에 대하여” 를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외의 경우” 를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2” 를 “수수료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인영하거나 별표” 로 한다.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세원관리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팀장 직위·성명	세입관리팀장 김영옥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영옥 (790-539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요일) ① (생 략)</p> <p>②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1와 같다.</p> <p>③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p> <p>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과 별표 1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 또는 2인 이상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p>	<p>제3조(증명 등의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p> <p>③ ----- ----- -----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p> <p>제4조(기준) ①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 ----- (제출)----- ----- -----.</p>

② · ③ (생략)

제5조(징수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전자수입증지 소인처리로 증명 등의 발급이 완료되면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 납부 후 소인처리 전에 신청한 민원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③ -----

----- 해당 -----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4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에 한한다.

1. ~ 5. (생 략)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8. ~ 12. (생 략)
- <신 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 .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8. ~ 12. (현행과 같음)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는 --- 경우에는 ----.

1. ~ 3.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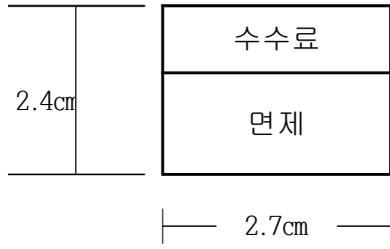
③ -----

--- “수수료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거나 별표---.

[별표]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

〈제7조제3항 관련〉



관계법령 발췌서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2.] [행정안전부령 제374호, 2023. 1. 12., 일부개정]

제17조(수수료) ②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2013. 12. 17., 2023. 1. 12.>

1.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2.] [대법원규칙 제3095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12. 12., 2013. 1. 8., 2014. 5. 30., 2016. 11. 29.>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

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6. 26., 2019. 11. 6., 2020. 7. 27., 2021. 9. 30., 2021. 11.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

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개정 2021. 6. 23.>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1](일부개정) 2023.05.01 조례 제2168호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